

▶ 문의 : 중소기업청 사업전환과(042-481-4531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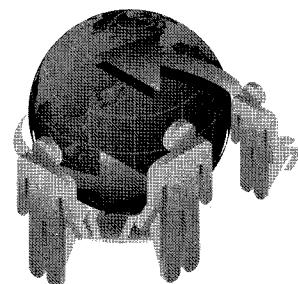
중소기업청

중소기업, 사업전환 쉬워진다.

사업전환 지원대상 전면 확대 및 지원절차 간소화

개요

- 성장이 둔화된 중소기업이 다른 사업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전면 확대하고, 지원절차도 간소화 된다.
- 중소기업청(청장 홍석우)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「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


주요내용

- 금번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지원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

- 지금까지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 사업전환 지원대상이었으나, 앞으로는 현재 영위하는 업종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전환하려는 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면 모두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.

- 이에 따라 종전에는 지원 받을 수 없었던 광업, 건설업 등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② 규제완화 및 지원절차 간소화

- 중소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을 승인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쳤으나 신속한 지원을 위해 동 심의위원회를 폐지하였으며, 사업전환계획 중단시에도 승인을 받던 것을 중단 통지만 하면 되도록 개선하였다.
- 또한,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시 기본계획서만 제출받고, 나머지 제출서류는 중진공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현장실사시 확인토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였다.

※ 제출서류 : (현행)사업전환계획서, 결산제무제표, 공장등록증, 금융거래확인서, 국세납세증명서, 자금신청근거서류 등 → (개선)사업전환계획서만 제출받고, 정보활용 동의를 통해 중진공이 직접 발급 또는 현장실사시 확인

③ 사업전환 승인기업 취소기준 완화

-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워 휴업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사업전환 승인 기업이 3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승인 취소하던 것을 6개월로 완화하였다.

지원내용

- 중소기업청은 2006년 9월부터 「사업전환 지원제도」를 도입하여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을 축소·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융자, R&D,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.
 - 현재까지 522개 기업의 사업전환을 승인하였으며, 사업전환 승인 기업에게 융자자금은 40억원, 기술개발자금은 1억원까지 지원하며, 사업전환계획 진단·분석을 위한 컨설팅 비용도 16백만원까지 보조하고 있다.
- 사업전환을 추진하려는 중소기업은 사업전환 지원센터(홈페이지 : www.kerc.or.kr, 전화 : 02-769-6804~5)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.

